

회의록

안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1-1호. 2026년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1-2호. 2026년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 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7356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4-0001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104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4-1-117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6684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3340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4-1-1025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6-2-8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6842)		
개최일시	2026년 6월 29일(월요일)		
장소	영상회의		
출석위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8인 출석		
회의내용	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
	제2026-재심-6-1-1호	원안 의결	-
	제2026-재심-6-1-2호	수정 의결	심의·의결서 문구 일부 수정
	제2026-재심-6-2-1호	일부 보상	붙임1 참조
	제2026-재심-6-2-2호	보류	붙임2 참조
	제2026-재심-6-2-3호	일부 보상	붙임3 참조
	제2026-재심-6-2-4호	일부 보상	붙임4 참조
	제2026-재심-6-2-5호	일부 보상	붙임5 참조
	제2026-재심-6-2-6호	기각	붙임6 참조
	제2026-재심-6-2-7호	기각	붙임7 참조
	제2026-재심-6-2-8호	기각	붙임8 참조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6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42세/화이자 2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증상이 발생하였고, 이상자궁출혈은 의학 이론 및 경험칙상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으로 볼 수 있어, 특별법 심의기준 제1·2호를 충족
- 관련 문헌 고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접종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예방접종의 영향은 회복되고 이후에는 기존 기저질환의 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 접종 후 약 6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적절
- (하이푸 시술에 대해) 의료 행위의 적절성 문제와는 별개로,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연속적인 치료 과정에 이루어진 시술은 보상이 타당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 : 60일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15세/화이자 1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증상의 최초 발생과 병원 내원 사이에 시간 차(107일)가 있으나 소명 자료를 보면 병원을 즉시 방문하지 못한 점이 이해되고, 이에 따라 특별법 심의기준 제1·2호는 충족
- 다만 피접종인과 같은 10대 청소년에서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이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비전형적 사례의 가능성 및 관련 근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결정 보류

라. 기타

- 연령별로 접종 후 장기간 지속된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국내·외 문헌 및 사례를 추가 검토한 후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42세/화이자 1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기존 자궁선근증 및 자궁근종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상자궁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, 접종 후 약 60일까지 발생한 이상자궁출혈 관련 진료비는 보상
- 다만 피접종인의 제1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이상자궁출혈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, 보상 범위는 이상자궁출혈과 관련된 진료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 : 60일, 당뇨병 진료비 제외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37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앞선 안전들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약 2개월까지 발생한 이상자궁출혈은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
- 다만 접종 이전부터 기존 자궁근종에 대한 하이푸 시술을 권고받은 상태였으므로, 하이푸 시술비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 : 60일, 하이푸 시술비 제외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32세/화이자 2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피접종인에게 발생한 자궁선근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보상 범위는 이상 자궁출혈 관련 진료에 한정하여 접종 후 약 2개월까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
- 다만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(41)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인 만큼, 기존 지원 결정 시 인정된 기간을 유지하여 보상하는 것이 적절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보상 기간 : 기존 '지원' 결정된 기간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000/여성/51세/화이자 3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피접종인은 백신 접종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질출혈 및 자궁선근증 의심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으며, 해당 증상은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- 피접종인의 연령·폐경 이행기 가능성·기존 자궁근종 및 이후 확인된 자궁내막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원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45세/화이자 2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이상반응 증상이 백신 접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며, 장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상자궁출혈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 설명하기 어렵고,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, 특별법 심의기준 제1·2·3호를 모두 충족하지 못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000/여성/66세/모더나 3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1차 접종 후 자궁출혈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, 보상 청구된 3차 접종 이후에 대해서만 판단할 필요
-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증상은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앞선 논의와 같이 다른 요건도 인정이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